

교비연구비 규정

제 정	:	2013. 1. 1.
개 정	:	2015. 8. 1.
개 정	:	2017. 6. 20.
개 정	:	2018. 5. 21.
개 정	:	2020. 10. 2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원에게 연구 활성화 및 학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교비연구비(이하 “연구비”)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

제2조(신청대상) ① 연구비의 신청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의 2항에 따른 전임교원으로 본교에 재직 중인 자로 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

1. 삭제 <2020. 10. 20.>

2. 삭제 <2020. 10. 20.>

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제12조에 해당되어 지급중지 또는 회수된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개시일로부터 5년간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. <신설 2020. 10. 20.>

제3조(신청 절차 및 방법) 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

1. 삭제 <2020. 10. 20.>

2. 삭제 <2020. 10. 20.>

제4조(대상자 선정) 연구비 지급대상자는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

② 삭제 <2020. 10. 20.>

제5조(선정대상자 순위) 교비연구비의 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1순위: 신입교원

2. 2순위: 학술연구위원회 심의 결과 취득점수가 가장 높은 자 <개정 2020. 10. 20.>

제6조(지급시기) ① 연구비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 10. 20.>

1. 전반기 지급: 4월 1일부터 지급

2. 후반기 지급: 10월 1일부터 지급

② 단, 부득이한 경우 연구비 지급시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변동될 수 있다. <신설 2020. 10. 20.>

제7조(지원금액) ① 연구비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

1. 신입교원: 500만원 이내
2. 기존교원: 300만원 이내

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총장은 연도별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0. 20.>

제8조(연구기간) ① 총 연구기간은 연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

② 단, 부득이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10. 20.>

제9조(연구비 집행) 연구비는 연구신청서에 기재한 소요예산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

제10조(연구계획 변경) ① 연구개시일 이후 부득이하게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학지원처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

② 연구계획 변경은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. <개정 2020. 10. 20.>

제11조(의무사항) ① 연구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

② 연구비에 의한 연구실적물은 제13조에 명시된 학술지에 게재 발표되어야 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

③ 2항에 따른 학술지 게재 발표는 연구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. <신설 2020. 10. 20.>

④ 연구실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야 하며,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지 않는다. <신설 2020. 10. 20.>

1. 국문표기: “이 논문은 0000년도 금강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.”

2. 영문표기: “This work was supported by 0000 GEUMGANG UNIVERSITY Research Fund.”

제12조(연구비 지급중지 및 반납)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고, 기 지급된 연구비의 전액을 일시에 회수하거나 연구책임자와 협의를 통해 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0. 20.>

1.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교를 퇴직한 경우 <신설 2020. 10. 20.>

2. 연구비 지급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<신설 2020. 10. 20.>

3. 연구수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<신설 2020. 10. 20.>

4. 허위,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<신설 2020. 10. 20.>

5. 연구책임자의 연구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<신설 2020. 10. 20.>

6. 제11조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<신설 2020. 10. 20.>

② 삭제 <2020. 10. 20.>

제13조(게재학술지의 등급 및 범위) 연구실적물은 국제(SCI급 또는 SCOPUS), 국내저명학술지(KCI 등재지)에 게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

제14조(연구용기자재 및 비품의 귀속) ① 연구책임자는 물품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

② 연구를 수행하면서 1항에 의해 구입한 비품, 기자재 및 도서는 연구 종료와 동시에 본교의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한다. <신설 2020. 10. 20.>

제15조(위원회) ① 연구비 지원을 위해 학술연구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0. 10. 20.>

② 위원회의 구성은 교학지원처장, 기획관리처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

③ 위원장은 교학지원처장이 되며, 당연직 위원외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삭제 <2020. 10. 20.>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2. 연구비와 관련된 규정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 <개정 2020. 10. 20.>

3. 연구비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

4. 기타 연구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⑥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6조(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경과조치

가.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중이거나 시행된 교비연구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나. 이 규정 제정과 동시에 연구비관리규정, 신입교원교비연구비지급지침은 폐지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이 규정개정 이전의 제5조(선정대상자 순위)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[지정양식 1] 삭제 <2020. 10. 20.>

[지정양식 2] 삭제 <2020. 10. 20.>

[지정양식 3] 삭제 <2020. 10. 20.>

[지정양식 4] 삭제 <2020. 10. 20.>

[별첨 1] 삭제 <2020. 10. 20.>